

우리나라 商標法의 主要 内容

商標는 商品 및 企業의 얼굴…企業戰略의 必

(3) 不登録事由

商標가 構成이 明瞭하고 世人들의 注意를 끌 수 있는 自他商品의 識別力이 있어 特別顯著한 標章으로서 登錄要件(商標法 第8條)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그 商標를 國際的 信義와 國家등의 公益을 위하고 私益의 調和를 이루게 하는 理由로 다음의 不登録事由에 該當할 경우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하고 있다(商標法 第9條 1項).

①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外國의 國旗 및 國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와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
機關의 稱號나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
標(商標法 第9條 1項 1號)

② 國旗나 國章 등 이와 같은 稱號나 標章은 어떠한
개인의 利益에 關한 私益이 아니고 國家 또는 公共의
利益과 國際機關등 標章의 權威를 존중하여 이를 保護
하는데 있다고 解釋된다.

③ 「國旗」라 함은 나라를 表象하는 旗로서 太極旗요
「國章」은 國家の 權威를 表示하는 徽章이고 「軍旗」는
陸海空軍旗와 單位部隊의 旗이며 「勳章」과 「褒章」은
國家에서 功勞가 있는 자에게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수여하는 것이다. 「外國의 國旗와 國章」은 그 나라를
表象하는 旗의 標章이요 「赤十字・올림픽의 稱號나 標
章」은 赤十字旗나 그 稱號와 올림픽의 마크나 그 稱號
이고 「國際機關의 稱號나 標章」은 國際機關들이 使用
하는 名稱인 稱號와 旗 그리고 標章을 말한다.

④ 이와 같은 標章은 商標의 一部에 國旗・國章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圖形을 結合하거나 國際機關을 表示
하는 稱號 및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경우 그리고
무궁화 모양으로 된 政府機關의 문장과 同一 또는 類

似한 것은 登錄할 수 없으며 國旗・勳章 또는 褒章은
現在 存在하는 것에 限하여 不登録事由에 該當된다.

⑤ 大法院判例를 보면 “勳章과 商標”에 있어서 무궁
화 大勳章 自體와 무궁화 圖形의 商標는 非類似의 것
이며(1963. 3. 21 大法院 判例), 國旗와 同一 또는 類似
한 商標인가의 與否에 있어서 本願商標의 반달商標의
色彩가 赤部分이 赤色, 아랫部分이 青色이라는 事實만
으로 太極圖形과 同一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고 上
下部分의 반달 橫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國旗의 太極
圖形과 類似한 圖形이라고 하기 어렵다(1671. 11. 30 大
法院 判例).

⑥ 國家・民族・公益團體・宗教 또는 著
名한 故人과의 關係를 虛偽로 表示하거나
이를 謹誹 또는 모욕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 第9條 1項 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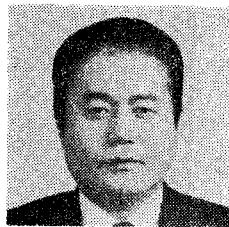
⑦ 우리나라等의 統治權・領土・國民의 三要素로 成
立되는 「國家」와 단군민족・백의민족 등 韓民族과 같이
生活양식이나 文化, 遺產과 言語등에 의한 거래의 「民
族」, 그리고 公益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格을 가진 非
營利의 公益團體와 憲法秩序內에서 認定되는 모든
「宗教」 또는 人士와 作家등 이름이 들어 낸 「著名한 故
人」과의 關係를 真實에 어긋나게 「虛偽」로 表示하거나
社會의 評價를 害칠 정도로 남을 헐어서 욕하는 「謹誹」
또는 虛偽든 真實의 事實이든 사람을 무시하여 욕되게
하는 「侮辱」을 하거나 남을 나쁘게 비평하는 「惡評」을
받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는 不登録事由에 該當된다는
것이다.

⑧ 여기에서 虛偽로 表示하거나 이를 謹誹 또는 모
욕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의 與否는 商標自體는 물
론 去來社會의 實情을 考慮하도록 되어 있다.

⑨ 이 規定은 國家社會의 公益이나 道德觀念의 維持

解說(5)

要件



金 寬 衡

〈本會 研修部長〉

라는 公益性保障의 側面에서 不登錄케 하는 것으로 生覺되며 이들 標章이 人類社會의 道德이나 公益에 벗어나는 虛偽, 謂謗, 侮辱, 惡評의 念慮가 되는 것에 該當이 될 경우만 登錄할 수 없고 이런 念慮가 되지 않을 程度의 標章은 그 構成이나 觀念, 外觀, 稱號를 綜合的으로 觀察하여 보고 商標을 使用할 指定商品의 關係도 品目別로 考慮해서 需要者나 一般社會 通念上 나쁜 영향이 미칠 念慮가 없을 경우에는 登錄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生覺된다.

③ 國家·地方 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團體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公益事業으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表示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다만 國家·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團體나 公益事業團體에서 그의 業務表章에 關한 登錄出願을 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3號).

④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와 非營利公益團體를 國益과 公益의 側面에서 保護하기 위하여 一般人등은 登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⑤ 當該機關이 業務를 途行하는데 必要한 業務標章은 國家나 公益機關의 効率의 成果를 거둘 수 있게 그機關에서는 登錄을 하도록 認定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⑥ 이 規定에서 非營利 公益機關이나 團體의 著名한 校名·宗教團體, 市·道·YMCA·보이스카우트 등을 表示하는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은 이 規定에 該當하여 一般人등이 登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紙上研修

■ 이달의 目次 ■

(3) 不登錄事由

2. 商標와 商品의 同一類似

〈다음號에 繼續〉

④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素亂하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 第9條 1項 4號)

⑤ 商標가 外觀의 모양이나 稱號를 부를 때와 그 觀念의 뜻에 있어 公序良俗에 反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치는 標章일 경우는 構成이 明瞭하고 自他商品의 識別力이 있어도 國家社會의 道德觀念이나 規範意識 또는 社會 通念에 따라 登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⑥ 商標의 構成自體가 과격한 文字나 저속한 圖形 등으로 된 경우 또는 商標의 構成自體는 그려하지 아니하여도 指定商品에 使用하므로써 社會 公共의 利益에 反하거나 社會의 倫理 및 道德觀念에 反하는 경우 및 需要者에게 혐오감을 주는 商標도 不登錄事由에 該當된다.

⑦ 商標에 있어 他法律에 의하여 使用등이 禁止되어 있는 標章이나 一般的으로 國際信義에 위배되는 標章도 登錄할 수 없다.

⑧ 政府에서 開設하거나 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에서 開設하거나 外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狀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그 商標의 一部로서 標章을 使用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5號).

⑨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의 權威를 유지하고 出品物의 品質에 대한 他商品과의 誤認混同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며 博覽會의 賞은 그 商品의 品質이나

■ 紙上研修 ■

效能이 優秀함을 表彰하기 위하여 授與되는 것이므로 이 賞牌나 賞狀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을 全部 또는一部를 商標에 包含시키는 것은 登錄할 수 없는 것이다.

⑤ 이려한 標章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商標가 品質保證의 機能을 가질 때에는 商品의 品質誤認關係를 考慮하여 登錄與否가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商標法 第9條 1項 11號).

⑥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略稱을 包含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承諾을 얻은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 第9條 1項 6號).

⑦ 他人의 姓名이나 商號등을 商標로 使用하게 되면 그 사람의 名譽와 信用을 害할 우려가 있고 他人의 人格을 侵害하는 結果가 되므로 私人의 人格權인 私益을 保護하는데 目적이 있다.

⑧ 自然人の「姓名」과 商人이 營業上自己를 表示하는 法人등의 이름인「商號」 또는一般的으로 부르는 이름·稱號·名義로서의「名稱」·사람의 容貌를 꼭 같게 그린 그림이나 새긴 彫刻인「肖像」·權限있는 者가 書類에 直接 姓名을 기재하여 싸인을 하는「署名」·圖章인「印章」·藝術家등이 본 이름외에 別途로 지어 부르는「雅號」·藝術人의 本名이 아닌 이름의「藝名」·作家들이 本名以外로 사용하는 이름인「筆名」과 이들의 略稱을 包含하는 商標은 不登錄事由에 該當된다.

⑨ 著名한 他人이라 함은 著名한 個人과 法人을 말하며 名稱과 商號는 公益團體(商標法 第9條 1項 3號)에 包含되지 않는 모든 團體와 商號 또는 名稱 그리고 이들의 略稱이 該當된다.

⑩ 人格權인 私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등은 登錄할 수 없으나 本人의 承諾을 얻은 경우는 登錄을 認定하고 있으며 비록 登錄이 되어도自己本人에게는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商標法 第26條 1項).

⑪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7號)

商標는 登錄에 의하여 獨占排他權을 갖게 되므로 이미 登錄된 商標와 同一하거나 類似한 商標를 그 登錄商標에 使用할 指定商品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기 위한 他人의 後出願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만일 登錄商標와 商標가 同一 또는 類似한 他人의 後出願商標登錄을 認定한다면 同一 類似하고 權利者가 다른 여러 사람들의 數個商標가 重複으로 무수히 登錄될 수 있기 때문에 需要者들이 自他商品의 識別을 할 수 없어 商品出處의 誤認混同을 이르켜서 流通秩序를 저해하게 되므로 商標法의 本質과 目的에 反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具體의 内容은 뒤에 別途 說明키로 한다.

⑫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부터 또는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確定日로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써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에 使用하는 商標, 다만, 他人의 商標權이 登錄失效日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商標法第9條1項8號)

⑬ 登錄商標를 오래 동안 指定商品에 使用하게 되면 需要者들이 그 商標가 누구의 것이며 品質이 어떠한지를 알게되어 商品의 信用이 축적됨에 따라 消滅한 후에 他人이 그 商標를 使用하게 될 경우 消滅前商標權者的商品으로 믿고 購買하게 되기 때문에 商品의 品質이 저조하거나 터무니없이 高價일 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欺瞞당할 念慮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消滅 또는 無效審決이 確定된 후 1년이經過하여야 他人出願의 登錄을 認定하는 것이다.

⑭ 原商標權者가 商標權의 消滅日前에 이미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부터 1年以内라도 그 商標의 商品이 市場에 欠어서 需要者들이 欺瞞당할 念慮가 없을 것으로 보아 他人의 登錄을 認定할 수 있다고 生覺된다.

⑮ 商標權의 消滅後 1年間의 空白을 두고 他人商標登錄을 認定하는 것은 需要者들이 一年程度의 期間이 지나면 消滅前商標가 那리에서 漏洩될 것으로 보아서 비록 他人의 同一商標가 流通되어도 商標權者가 變更된 것을 認識할 수 있어, 商品出處의 混同이 없다는

취지로 解釋된다.

② 「商標登録의 失效 또는 消滅」이라함은 存續期間의 滿了・拋棄로 因한 登錄의 抹消 營業의 廢止・登錄의 取消 또는 無效의 確定을 말한다.

③ 他人의 商標權登錄失效日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 하였을때를 除外하고는 登錄失效 또는 消滅日부터 1年内의 期間안에 商標權者의 商標登錄出願이 없을 때에도 原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商標登錄出願은 查定時期에 不拘하고 出願日字를 基準으로 하여 登錄할 수 없다.

④ 登錄商標의 失效日로부터 1年以內의 期間안에 原商標權者가 아닌 他人의 先出願이 있을 때에는 그 先願에 대한 拒絕查定通知를 하기 前이라도 後出願인 商標權者의 商標登錄出願을 登錄查定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⑤ 他人의 商標權이 登錄失效日前 1年以上 使用하지 아니 하였을때의 경우 商標權者自身이 登錄抹消後 登錄失效 또는 消滅以前 1年以上 不使用 하였음을 是認한 證據書面(本人 印鑑證明添附)을 提出하거나 商標權者가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대한 營業을 廢止하였을때와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相續人이 그 商標의 移轉登錄을 하지 아니하였을때(商標法第34條)에 該當하여 1年 以上이 초과 되었음을 認定하는 書面을 提出하였을 때에는 登錄을 認定하고 있다.

⑥ 他人의 商品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의 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9號)

商標를 使用한 結果 需要者間에 널리 顯著하게 認識되어 그 商標의 商品이 特定人の 것이라고 알 수 있을 程度인 「周知」商標는 他人이 登錄을 받을 수 없다. 이와같은 周知商標는 本人이 登錄을 하지 아니 하였어도 需要者들에게 使用에 依한 信用이 蓄積되어 特別顯著한 商標이기 때문에 이를 保護하여 商品의 誤認混同을 防止하기 위하여 他人의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 周知商標는 商標를 어느 商品에 使用하여도 出處의 誤認混同이 을 程度의 著名商標가 되기 以前段階의 商標로 볼 수 있다고 生覺된다. 具體的인 内容은 뒤에 周知著名商標에서 說明키로 한다.

⑦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10號)

商標를 多年間에 걸쳐 오래동안 使用한 結果 그 商標의 商品에 대하여 一般需要者들間에 全國等 广泛위한 地역에 널리 顯著하게 認識되어서 그 商品을 認定받아 信用이 蓄積擴大됨에 따라 商標가 化體되어 「著名」하여 저서 이와 同一類似한 商標를 他人이 어떤 모든 商品에 使用하여도 特定人の 著名商標商品으로 誤認混同을 이르킬 수 있는 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著名商標는 登錄을 하거나 未登錄狀態에서도 登錄된 指定商品과 同一類似한 商品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의 非類似한 全體商品과 企業까지도 混同이 되는 商品이나 營業의 混同을 일으킬 念慮가 있는 商標를 말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具體的인 内容은 뒤에 周知著名商標에서 說明키로 한다.

⑧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11號)

⑨ 商標는 商品自體나 그 品質을 誤認하게 되면 品質保證機能을喪失하므로 商標의 構成要所와 使用할 指定商品의 關係를 블때 그 原來의 商品을 다른 商品으로 混同케하거나 商品의 本質의 品質과 전연 다른 더 좋은 品質 또는 아주 나쁜 品質等을 지녔다고 需要者가 잘못認識할 程度의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하는 念慮가 있는 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갑기약에 알려진 「아스파린」 商標를 消化濟藥品에 使用하게 될때 商品自體의 混同을 이르키는 것이라든가 디자인도 나쁘고 纖維도 저질품인 模倣製品의 衣類에다 「페예르가르뎅」이라는 商標를 붙여一流商品으로 보도록 品質을 誤認케하는 것等이다.

⑩ 商標를 使用할 商品의 生產地를 誤認하도록 出處를 混同케하거나 國產品을 外國商品으로 誤認할 念慮가 있어 「需要者를 欺瞞」하는 商標는 登錄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纖維系統의 모시에 있어서 어느 地域에서 生產된지도 알지 못하는 삼베 정도의 製品에다 「한산모시」라는 商標을 使用했을때 產地를 誤認케하거나 國內商品인 가방에다 國語併記도 없이 英文으로 「DIEOL」이라는 造語商標 또는 外國商標인 Dior등을 그대로 使用하여 外國商品으로 誤認케 하므로 需要者들을 欺瞞하는 경우등이다.

④ 商標를 使用하는 「商品의品質을『오인』한다」함은商品의品質의 오인과商品자체의 오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商品의品質의 오인」은 그品質이 그商品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불문하고 그商品이 갖는品质로서 일반需要者에게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하고 「商品의 오인」은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일반需要者에게類似한商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하며 「需要者를 기만한다」함은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타인의登録商標를模倣하여自己商標로登録出願 또는登録한 것 같이하거나國內商品을外國商品으로 혼동케하여需要者에게商品出處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需要者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⑤ 商標의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商品의오인과기만을 할 우려가 있는商標에 대하여 거절이유의통지를 한 때에 있어 보정에 의하여商品의오인과기만을하지 아니하는指定商品으로 감축하였을 때에는出願의요지를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을하고 있다.

⑥ 商標를 사용할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商品의오인과기만을 할 우려가 있는商標에 대하여 거절이유의통지를 한 경우에 있어出願書에첨부된商標를商品의오인과기만을아니하도록삭제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보정한부분이단순한부기정도라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보정을인정하는것으로하여出願의요지를변경한 때에는 이를拒绝하여認定하지 아니한다.

⑦ 外國文字商標에 있어서 그音의國文字명행표시의보정은요지변경이아닌것으로하여商品의오인으로보지아니한다. 다만, 이의명행된文字商標에있어서그어느하나의文字를삭제하는것은그려하지아니하다.

⑧ 商品명칭을결합하여出願한商標에있어서그商品名稱과指定商品의내용이다를때에는登録을認定하지아니한다.

⑨ 商標중에「特許」「實用新案」「意匠」「KS」「○○博覽會××賞受賞」등商品의품질을보증하는것으로인식되는문자가결합되었을때에이를삭제하는보정을하면인정하고그려하지않을때에는認定하지아니한다.

⑩ 不登録事由의適用과判斷時點

① 著名한他人의姓名, 名稱等(商標法第9條1項6號)과需要者에게顯著하게認識되어있는周知商標(第1

項9號)그리고他人의商品과營業의混同을이르키는著名商標(第1項10號)의規定은「商標登録出願時」에 그內容이該當되지아니하면이를適用하지아니한다(商標法第9條2項).

② 他人의登録商標와同一類似한商標(第1項7號)와商標權의消滅또는無效審決確定日로부터1年이 경過하지아니한出願商標(第1項8號)의規定은商標出願時에그內容이該當되는것에대하여適用한다(商標法第9條3項).

③ 需要者에게顯著하게認識되어있는周知商標(第1項9號)와先出願主義(商標法第13條)規定에違反하므로登録無效審決이確定되었을경우에正當한出願者が그商標을出願할때에는無效確定審決日로부터1년이경과한後가아닌1년이내로登録을認定하는것으로解釋된다(商標法第9條2項4號).

④ 商標登録의取消事由인他人의使用默認(商標法第45條1項1號)또는故意로登録商標를使用하게하거나(同45條1項3號)商標를1年以上不使用(同45條1項3號)하였을때그리고團體標章을團體員이違反하여使用하는것을默認하는것(同45條1項6號)과團體標章의不法變更으로因하여出處나品質等을誤認케하는(同45條1項7號)理由로取消審決이나判決이確定될경우그날로부터3년이경과한後에야原來登録받았던商標權者나그商標를使用한他人이消滅한商標를다시出願登録받을수있다(商標法第9條5項).

※以上說明한規定以外의商標法第9條1項에該當되는不登録事由의適用時點은商標登録查定時에判斷하는것을原則으로하고있다.

2. 商標와商品의同一類似

(1)概要

商標는正當한出願者에게登録을認定하고登録權者에게獨占排他權을부여하여他人이그同一類似한商標와商品에使用하지못하게禁止함으로서權利者를保護하는私益을圖謀하고있다.

또한商標機能인商品出處의誤認混同을防止하기위하여이미登録된商標와同一類似한商標를그商標의指定商品과同一類似한商品에use하기위한後出願商標는登録을認定하지아니하며만일, 이런商標의登録을認定한다면需要者들에게商品에대한誤認과混同을일으키게하고商標使用者는業務上信

用을 維持할 수 없게되어 流通秩序의 혼란을 가져와 商標制度에 反하게 된다. 따라서 商標法에서는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第9條1項7號)를 不登錄事由로 定하고 있으며 1商標 1出願主義(商標法第11條)와 商標登錄의 先願主義(商標法第13條), 登錄商標 使用에 대한 侵害行爲(商標法第36條1, 2項)와 其他 商標登錄의 取消 또는 無效事由에 있어서 商標와 商品의 同一 類似 與否 概念이 該心의役割을 하고 있다.

(2) 商標의 同一·類似

가. 商標의 同一

① 「商標의 同一」이라 함은 記號, 文字, 圖形, 이들의 結合體인 商標의 構成을 比較할 때 本質적으로 두 商標가 相互一致함을 말한다.

② 이同一商標는 肉眼으로 볼 때 그構成이 相互 같은 商標인 것이며 별로 차이가 없는 크기나 극히 섬세한 部分과 色彩까지를 嚴密히 分析하여 同一與否를 判斷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同一商標의 概念은 去來社會의 通念上 一般需要者들이 보는 觀點에서 同一하다고 認識되는 商標라면 이는 同一한 商標로 認定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이런 경우 文字商標에 있어서 “한가람”과 “한가람”的 두 商標는 全體가 同一하다고 보며 두 商標가 소리나는 발음인 「稱呼」만 同一(개나리=개나리)한 경우와 外部모양인 「外觀」만 同一(₩=₩)한 경우 그리고 그 뜻을 意味하는 「觀念」이 同一(“발머리”文字=“발머리圖形”)한 경우 또는 稱呼, 外觀, 觀念 全體가 同一한 경우 등이 있다.

④ 同一商標은 아니나 이에 가까운 「同一性」이 있는 商標」라 함은 商標의 構成이 完全히一致하지는 않으나 需要者들이 볼 때 同一한 것처럼 混同할 程度의 商標를 말하며 文字商標에 있어서 縱書와 橫書等의 差異로서 嚴格한 意味로는 同一商標가 아닌 類似商標라고 할 수 있다.

나. 商標의 類似

① 意義

⑤ 「商標의 類似」라 함은 商標의 構成을 對比 觀察할 때 두 商標가 同一하지 않고 稱呼, 外觀, 觀念이나 이들을 全體的으로 볼 경우 去來上 一般需要者들로 하

여금 商品의 出處와 品質의 混同을 일으킬 程度로 類似한 商標를 말하며 類似한 商標는 서로 “닮아있는 것” 만이 아니라 “닮아있기 때문에 使用에 따라 商品出處의 混同을 일으키는 것”도 包含된다.

⑥ 商標는 法으로 權利者를 保護하며 그 效力範圍에 있어서 登錄된 同一商標뿐만 아니라 類似한 商標까지도 他人의 使用을 禁止하여 이를 使用하면 侵害行爲로規定하고 있는가 하면 他人의 商標登錄出願時에도 類似한 商標까지 拒絕理由로 採擇하고 있음은 商標를 使用한 商品의 誤認, 混同을 防止하려는 商標制度의 目的을 達成하고 去來社會에서 商品의 品質이나 出處의 混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範圍를 認識하기 위하여 類似概念을 正確히 파악하는데 그 實益이 있다.

② 類似의 모습

② 稱呼類似

「稱呼類似」라 함은 사람의 聽覺을 通하여 去來者間에 商標를 呼稱하는 발음이 類似하기 때문에 商品의 誤認混同이 될 念慮가 있는 類似商標를 말한다.

外觀이 다르거나 觀念이 달라도 呼稱되는 發音이 類似하면 稱呼가 類似한 것이라고 이 때의 判斷은 商標로부터 自然히 나오는 가장 부드러워 쉬운 呼稱에 의하여 判斷하여 이 稱呼는 商標全體에 의해서 불리우는 경우의 注意를 끌 수 있는 要部 또는 附記의 部分에 의하여 나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稱呼類似 商標를 살펴보면 千年과 天然, TVC와 TBC, PQR과 PQL은 相互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大法院判例에서는 MAGICLOTH와 MAGIC(81.7.7 判決), 베락스와 MAALOX(81.7.7 判決), Sunrex와 Sun FLEX(81.9.22 判決)는 稱呼가 類似하다고 判決하였다. <계속> <略>

零細發明家를 돋습니다

大韓辨理士會에서는 국민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자 發明家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 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 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
(도면 포함)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 (567-3068 · 568-8517)로 問議바랍니다.